



제418회국회 (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착금과 보로금의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225)

2024.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충권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4. 7. 1.
3. 회 부 일 : 2024.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 여건 및 생계 유지 능력 등을 고려한 정착금 및 그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문제와 사회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정착금 등의 사기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①(정착금등수급계좌)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안 제21조의2 신설), ②(수급권의 보호) 정착금품 및 보로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안 제21조의3 신설) 등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 및 보로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u><신설></u>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21조의2(정착금등수급계좌)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로금(이하 이 조에서 “정착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보호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정착금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 설> 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생 략)	<u>불가피한 사유로 정착금등을 정착금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u> <u>② 정착금등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정착금등만이 정착금등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등수급계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1조의3(수급권의 보호) ① <u>정착금품 및 보로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u> <u>② 정착금등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u> 제21조의4(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현행 제21조의2와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현행법 제21조¹⁾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1)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을 지급할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정착금에 대해서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정착금품 및 보로금을 받을 권리의 양도, 담보 제공 및 압류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문제와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착금 등을 사기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정착금 등을 수급할 권리를 압류당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된 정착금 등에 관해서는 안전하게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바,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착금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정착금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품과 보로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금과 보로금(이하 ‘정착금등’)을 압류금지 전용 수급계좌를 만들 정도로 보호 필요성과 관련하여,

‘정착금’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처음 정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금으로 현재 하나원을 수료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및 정착장려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기초적인 생계 지원의 취지도 있다고 할 것인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불특정 위험으로부터 정착금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음.

또한, ‘보로금’의 경우 현행법 제21조제2항에서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라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은 보로금에 대하여는 정착금 처럼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통일부는 ‘보로금’이 북한 관련 정보·장비를 제공해준 대가로 단 한 차례 지급되고 있어 일종의 포상 또는 보상금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 보로금 역시 초기 사회 정착금으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착금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정착금과 보로금 모두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지급받을 권리의 양도 및 압류금지 등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기초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 수급계좌를 만들고 압류금지를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의 입법례²⁾를 고려할 때 입법 형식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통일부와 법무부는 정착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그 제공하는 정보 등의 대가로 받는 ‘보로금’의 경우 일종의 보상금 성격으로 보아 압류를 금지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67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압류 등의 금지) ①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당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